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258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5940	김주영의원	2024.11.27.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후 축조심사
2205947	이수진의원	2024.11.27.	
2206660	박홍배의원	2024.12.18.	
2210198	이용우의원	2025.4.28.	
2211710	안호영의원	2025.7.2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12.)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후 축조심사
2211895	김태선의원	2025.7.31.	
2212628	김위상의원	2025.9.3.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9.19.)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勤勞者の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